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나5445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샘 담당변호사 서경원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박근용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8.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1. 선고 2022가단255076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951,179원과 그 중 273,709,116원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21.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는 3억 원의 대출에 관하여 보증기간은 2018. 9. 21.부터 2019. 9. 20.까지로, 보증원금(한도금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소외회사는 위 대출의 상환을 연체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1. 21. 위 은행에 보증원리금 273,709,116원을 변제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약금은 1,349,130원이고, 변제하여야 할 채권보전조치 비용은 892,933원이며, 원고가 정한 소외회사의 구상금 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신용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연 8%이다.

나. 원고는 소외회사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약정인: 피고

신용보증을 부탁한 기업: 소외회사
약정인은 보증기업이 원고로부터 제1조 표시 신용보증을 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2조 표시 책임경영의무를 성실이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부탁한 기업(이하 '보증기업'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제1조 표시 신용보증약정의 각 조항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이 약정서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아래 신용보증약정1) 과 관련하여 보증기업이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이 되어 부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약정인이 제2조에서 정한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하 생략) 제2조(책임경영의무)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 약정인과 보증기업은 아래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1.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3. 공문서, 사문서의 위, 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4.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회생 파산, 부당금품 수수 및 자금유용 등의 금지 5. 명의대여, 사해행위, 법인격의 남용 및 고의부도 등의 금지 6. 제6조에서 정하는 보증서 담보대출의 자금사용계획서상 용도 외 사용금지 7. 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책임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신보의 사전동의 8.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제3조(책임경영의무 준수기간) ① 약정인의 책임경영의무 준수기간은 제1조에서 정하는 보증기간으로 합니다. ② 약정인은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책임경영의무를 연장된 보증기한까지 준수하기로 합니다.

제4조(의무위반과 연대보증책임 등) ①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은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제1조의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이하 생략)

다. 전문경영인인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19년 1월경 소외회사에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9. 4. 15. 열린 소외회사의 이사회에서 D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안이 가결되어 2019년 1월경 또는 늦어도 2019. 4. 15.경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라. 피고는 2019. 6. 3. 소외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는데, 이로써 당시 소외회사에는 피고와 E 2명이 사내이사로 있다가 E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남게 되었다. 소외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 원이다.

마. 피고나 소외회사는 D과 피고의 사임 시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 10, 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외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경영자인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하는 대신에 소외회사에 대한 책임경영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간 내에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소외회사의 2019.

4. 15.자 이사회에서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D의 이사 및 대표이사 사임안을 가결하였고, 피고 자신도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2019. 6. 3. 소외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당시 피고는 자신의 부 C의 전횡을 용인하면서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는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7호 및 제8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기업인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에 관하여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책임경영의무 위반 여부

1)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약정 제2조의 문언을 살펴보면, 제2조는 약정인 및 그가 경영하는 보증기업에 대하여 그 각 호에 정한 어떤 작위나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이고, 그 제7호는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을 대상을 열거하면서 ‘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책임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 처분,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를 든 점에 비추어 ‘대표자 사임’은 약정인이 대표자에서 사임한 경우라고 봄이 자연스러우며, 나머지 경우인 ‘경영탈퇴’, ‘책임경영 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지분 2분의 1 이상 처분’ 역시 문언상 약정인에 대하여 발생할 사유를 정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약정인인 피고 본인이 아닌 D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이 피고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자본금 5,000만 원인 소외회사의 이사 전원인 2명의 사내이사 중 1인의 지위에 있다가 2019. 6. 3.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피고는 D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소외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중 1인이었음에도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7호의 취지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보증기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책임을 부담하는 약정인이 보증기업의 실경영주 지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이탈이 우려되는 행위에 관하여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에는 소외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다가 이후 대표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기간 내에 그 지위에서 사임하려면 원고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의 행위가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7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7호의 ‘대표자 사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원고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달리 보더라도 적어도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의무위반으로서 이 사건 약정 제2조 제8호의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취지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탈퇴 여부 등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살피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제2조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책임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에 정한 책임경영의무 위반의 효과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소외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액인 275,951,179원(= 보증원리금 273,709,116원 + 위약금 1,349,130원 + 보전비용 892,933원)과 그 중 보증원리금 상당 273,709,116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일인 2020. 1. 21.부터 소장송달일인 2022. 7. 26.까지는 약정한 연 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호, 판사 권기만, 판사 김성훈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가리킨다.

2) 사임등기는 2020. 11. 24.에 이루어졌으나 이는 사임의 효력 발생 시기에 영향이 없다.